

2017.6.1일 시행 <네트워크 안전법> 중국에 진출한 국내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G3(미국, 중국,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법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나?

EU 28개국,
2018년 5월 25일부터
GDPR시행



중국
2017년 6월 1일부터
네트워크 안전법 시행



미국 뉴욕
2017년 3월 1일부터
NYCRR500 시행

<네트워크 안전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법률로

자국, 해외기업 모두 포함하여
중국에서 생산,수집된 개인정보, 데이터는 중국 내 저장
2018년 12월부터 개인정보, 데이터의 국외반출 제한
위반시 허가취소, 폐쇄, 영업정지, 과징금

<네트워크 안전법> 적용범위

영토 범위 (자국 해외기업 모두 포함하여) 중국 국내에 건설, 운영, 유지, 사용되는 네트워크

업종범위
(28개 업종)

석유, 천연가스, 석유화학, 전력, 통신, 전자정보, 철강, 비철금속, 장비제조, 화학공업, 국방군수공업, 기타공업, 지리정보, 민간핵시설, 교통운수, 우체국택배, 수리공사, 인구건강, 금융, 산용조회, 식품/약품, 통계, 기상, 환경보호, 방송, 해양환경, 전자상거래, 기타

인적(법인 개인) 범위 네트워크운영자(네트워크 소유/관리/제공자), 네트워크 제품서비스제공자, 네트워크사용자

다음은 핵심정보 인프라 시설로 규정하여 중점적용

<사이트> 정당 및 정부기관 웹사이트, 기업 및 업체 사이트, 뉴스웹사이트 등
<네트워크서비스플랫폼> 실시간통신, 온라인쇼핑 및 결제, 검색엔진, 전자메일, 포럼, 지도, 오디오 및 비디오 등 서비스
<생산비즈니스> 사무와 업무시스템, 산업제어시스템, 대형데이터센터, 클라우드컴퓨팅플랫폼, 텔레비전 전파시스템 등
<정보네트워크> 정보통신망, 방송, 인터넷망 등 정보네트워크 및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와 기타 대형공공정보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출처:핵심정보 인프라시설 안전보호조례 의견수렴안, 국가 네트워크 보안검사 운영지침)

<네트워크 안전법> 적용정보

-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도 처리대상
- 네트워크상의 불법정보처리를 막기 위한 법이므로 수기로 기록된 정보는 규제하지 않음

중요정보

- 핵시설, 화학바이오, 국방군사공업, 인구건강분야 정보
- 대형프로젝트, 해양환경관련 민감한 지리정보
- <핵심정보 인프라시설>의 네트워크 안전정보
(출처: 개인정보 및 중요데이터 안전평가방법 수렴방안)

중국에 진출한 국내기업이 직면한 2대 RISK

RISK 1 안전평가 및 수사 협조 과정에서 영업비밀 침해 RISK
설계도면, 소스코드 등 지적재산권 및 영업비밀이 침해될 가능성이 존재

RISK 2 허가취소, 폐쇄, 영업정지, 업무정지의 RISK

1. <핵심정보 인프라시설>일 경우

중요정보 및 개인정보 국외이전시
연 1회 안전평가를 받아야 함

위반시
허가취소, 홈페이지폐쇄
관련업무정지, 과징금

순번	네트워크 안전성 및 잠재적 리스크에 관한 안전평가 자체평가항목
1	데이터 국외이전의 필요성
2	개인정보관련상황 : 개인정보의 수량, 범위, 유형, 민감정도 및 개인정보 당사자 동의 등
3	중요 데이터 관련 상황 : 중요데이터의 수량, 범위, 유형 및 민감정도 등
4	데이터 수령자의 안전보호조치, 능력, 수준 및 소재국과 지역의 네트워크 안전평가 등
5	데이터 국외이전 및 재전송 후의 누설, 훼손, 왜곡, 남용 등 리스크
6	데이터 국외이전 및 국외이전데이터 축적으로 인해 국가안전, 사회공공이익, 개인합법이익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7	기타 평가해야 하는 중요 사항

보안심사를 통과한 네트워크 상품, 서비스만 이용해야 함

위반시
관련업무정지, 과징금

네트워크 제품 및 서비스구매시 의무
1. 구매자와 제공자 사이에 보안 및 비밀유지의 의무 범위, 책임사항을 명확히 해야 함
2.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국가안보심사>를 거쳐야 함

2. <네트워크운영자(네트워크 소유/관리/제공자)>일 경우

사용자의 실명을 요구하지 않거나 실명을 사용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위반시
홈페이지폐쇄
관련업무정지, 과징금

네트워크사용자에게 실명가입 요청 의무
네트워크접속 및 도메인등록, 집전화/휴대폰 등록, 사용자를 위한 안내서비스 등에서 네트워크사용자에게 실제 신분정보를 요구해야 함, 사용자가 거부시 서비스제공 금지

<금지정보>전송을 확인했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관련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위반시 영업중지, 관련업무정지, 과징금

3. <네트워크운영자> or <네트워크제품 및 서비스제공자>일 경우

개인정보 보호의무(41조) (비식별화정보는 예외)	개인정보 수집/사용시 합법성, 정당성, 필요성의 원칙 준수 공개수집 · 사용 원칙에 따라 정보수집 및 사용 목적과 방식과 범위 명시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획득 서비스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아야 함	위반시 허가취소, 영업중지, 관련업무정지, 홈페이지폐쇄, 과징금
정보주체의 삭제권, 수정권 보장(43조)	법규나 계약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사용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삭제 요구가능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 요구 가능	

위반시 처벌 자세히 보기

	위반 유형	제재 방법 및 기준				과징금(단위 위안)
		관련업무중지	영업중지	홈페이지 폐쇄	허가 취소	
핵심정보인프라 시설운영자	제35조를 위반하여 보안 심사를 거치지 않았거나 보안 심사에 통과하지 않은 네트워크 상품,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제65조)	○				구매 금액의 1배~ 10배 책임실무자는 1만~10만
	제37조를 위반하여 〈핵심정보 인프라시설 운영자〉가 국외에 네트워크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안전평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이전한 경우 (제65조)	○		○	○	5만~50만 책임실무자는 1만~ 10만

네트워크 운영자	네트워크 운영자가 보안 의무 불이행시 시정 명령 불이행 또는 보안 위험이 발생한 경우(제59조)	○				1만 ~10만 책임실무자는 5천만~ 5만
	네트워크 운영자가 사용자의 실명을 요구하지 않거나 실명을 사용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또한 시정명령 불이행 및 사안이 중대한 경우(제61조)	○		○	○	5만~50만 책임실무자는 1만~10만
	제47조를 위반하여 〈네트워크 운영자〉가 〈금지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확인했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또한 관련 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제68조)	○	○			시정명령 거부 또는 사안이 중대한 경우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의 과징금 직접 책임 있는 실무자에게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

〈네트워크 운영자〉, 〈네트워크 상품/서비스 제공자〉	제41조 제43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제64조) *사안에 따라 단독 처벌 가능	○	○	○	○	위법소득의 1배 이상 10배 이하의 과징금 부과 가능 위법소득이 없는 경우 50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 부과
-------------------------------------	--	---	---	---	---	--